

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6415(본소), 2020나16422(반소) 판결 [구상금 · 정산금
지급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원고승계참가인 1. AI

2. 주식회사 AJ

3. AK

4. 주식회사 AL

5. AM

6. AN 주식회사

7. AO

8. AP

9. AQ

10. AR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합18248(본소), 2019가합2120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281,575,442원과 그중 253,620,669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는 2020. 6. 13.부터, 피고(반소원고) C는 2020. 7. 28.부터,

21,666,017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는 2020. 6. 27.부터, 피고(반소원고) C는 2020. 6. 30.부터, 6,288,756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148,248,665원과 그중 115,084,004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21. 3.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피고(반소원고) C는 1,884,475원을
- 각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 1) 원고승계참가인 AI에게 42,484,685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J에게 34,351,568원, 원고승계참가인 AK에게 39,241,999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L에게 81,835,794원, 원고승계참가인 AM에게 22,864,035원, 원고승계참가인 AN 주식회사에게 2,198,432원, 원고승계참가인 AO에게 7,351,130원, 원고승계참가인 AP에게 6,137,017원, 원고승계참가인 AQ에게 17,156,00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1. 3.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원고승계참가인 AR에게 6,288,75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1. 3.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61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659,44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최후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승계참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AI에게 42,484,685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J에게 34,351,568원, 원고승계참가인 AK에게 39,241,999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L에게 81,835,794원, 원고승계참가인 AM에게 22,864,035원, 원고승계참가인 AN 주식회사에게 2,198,432원, 원고승계참가인 AO에게 7,351,130원, 원고승계참가인 AP에게 6,137,017원, 원고승계참가인 AQ에게 17,156,00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승계참가인 AR에게 6,288,75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금전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금전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하였다),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본소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인용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금전지급 청구 부분과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승계 참가인들의 승계 참가신청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승계참가인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승계참가인 AI, 주식회사' AJ, AK, 주식회사 AL, AM, AN 주식회사, AO, AP, AQ(이하 통틀어 '원고승계참가인 AI 외 8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19나1722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15644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본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53,620,669원(원고승계참가인 AI 42,484,685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J 34,351,568원, 원고승계참가인 AK 39,241,999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L 81,835,794원, 원고승계참가인 AM 22,864,035원, 원고승계참가인 AN 주식회사 2,198,432원, 원고승계참가인 AO 7,351,130원, 원고승계참가인 AP 6,137,017원, 원고승계참가인 AQ 17,156,009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명령은 2020. 6. 12. 피고 B에게, 2020. 7. 27.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 AI 외 8인은 2020. 10. 12.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30932호로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20. 10. 1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위 채권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채권자 AS, AT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차 143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20. 6. 24.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18232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본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1,666,017원(AS 8,222,073원, AT 13,443,944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1)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6. 26. 피고 B에게, 2020. 6. 29.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원고승계참가인 AR은 원고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19나1722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21. 2. 4. 수원지방법원 2021타채101370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본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6,288,75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2. 8.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3, 갑나 제2호증의 1, 2, 갑나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 33 내지 35, 37호증"을 추가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비용의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부분의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3)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본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원고승계참가인 AI 외 8인이 253,620,669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AS, AT이 21,666,017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AR이 6,288,75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위 각 피압류채권액 합계 281,575,442원(= 253,620,669원 + 21,666,017원 + 6,288,756원)과 그중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253,620,669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각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B는 2020. 6. 13.부터, 피고 C는 2020. 7. 28.부터,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21,666,017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각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B는 2020. 6. 27.부터, 피고 C는 2020. 6. 30.부터, 이 사건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6,288,756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들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본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 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원고가 위와 같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청구 부분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나누지 않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 중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각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2020. 7. 29. J으로부터 공증인가 AB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3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J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3억 9,000만 원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0.

J과 사이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9.,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J은 2020. 7.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한 3억 9,000만 원(= 원금 2억 5,000만 원 + 지연손해금 1억 4,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C는 J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2020. 9. 1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위 채권양도 이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 제3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12. 5. J의 사위인 O2)와 사이에, 제주시 V 지상 집합건물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8억 원을 투자받고, 준공 후 투자이익금 8억 원을 더하여 합계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O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 20.부터 2017. 6. 23.까지 총 5회에 걸쳐 O에게 위 투자원금 8억 원 중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와 O는 2017. 7. 20.경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으로 원고가 O에게 위 투자원금 8억 원 중 그때까지 반환되지 않은 잔액 2억 5,000만 원과 위 약정 투자이익금 8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투자원금 잔액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② 원고는 O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2017. 7. 27. AC에게 3,000만 원, 2017. 7. 29. AC에게 2,000만 원, 2017. 8. 25. AC에게 2,000만 원, 2017. 8. 31. AC에게 3,000만 원, 2017. 10. 19. AD(O의 처)에게 1억 원, 2017. 11. 15. O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투자원금 잔액 2억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에 O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8억 원을 반환받았고, 이로써 원고와 O 사이에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8호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계약의 명의자로서 투자원금 반환채권자인 O가 위 투자원금 잔액 2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고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O를 대신하여 행위하던 J과 원고가 위 투자원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J과 사이에 위 정산합의에 따른 투자이익금 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4억 원을 변제기 2017. 12. 29.,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AB법무 법인증서 2017년 제369호)도 작성하였다. J은 위와 같이 투자원금 잔액 2억 5,000만 원이 모두 반환된 후 원고에게 'AB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3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대여금 4억 원을 반환받았고, 이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9호증)을 교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하여 O를 대신하여 행위하던 J도 위 투자원금 잔액 2억 5,000만 원이 반환됨으로써 투자원금은 물론 투자이익금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계약에 근거한 원고와의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피고들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금액

1) 원고

원고는 위 구상금 396,659,4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효력이 미치는 청구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돈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구상금 원금 115,084,004원(= 396,659,446원 - 281,575,442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분 최후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3.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효력이 미치는 구상금 원금 281,575,442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고, 피고들의 위 채무는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별로 위 구상금 원금 281,575,4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피고 B는 별지 1. '피고 B 지연손해금' 기재와 같이 계산한 합계 33,164,661원, 피고 C는 별지2. '피고 C 지연손해금' 기재와 같이 계산한 합계 35,049,136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48,248,665원(= 구상금 원금 115,084,004원 + 지연손해금 중 중첩되는 부분 33,164,661원)과 그중 원금 115,084,004원에 대하여 소장부분 최후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와 중첩되지 않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1,884,475원(= 35,049,136원 - 33,164,66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 AI에게 42,484,685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J에게 34,351,568원, 원고승계참가인 AK에게 39,241,999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L에게 81,835,794원, 원고승계참가인 AM에게 22,864,035원, 원고승계참가인 AN 주식회사에게 2,198,432원, 원고승계참가인 AO에게 7,351,130원, 원고승계참가인 AP에게 6,137,017원, 원고승계참가인 AQ에게 17,156,00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명령 최후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 AR에게 6,288,756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효력이 미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조효정 판사 이영미

별지

1)당초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AU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받았으나, 2020. 9. 10.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다.

2)계약 명의는 O로 되어 있으나, J이 O를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행위하였다. 이하 J이 O를 대신하여 한 행위도 계약 명의자인 O의 행위로 표시한다